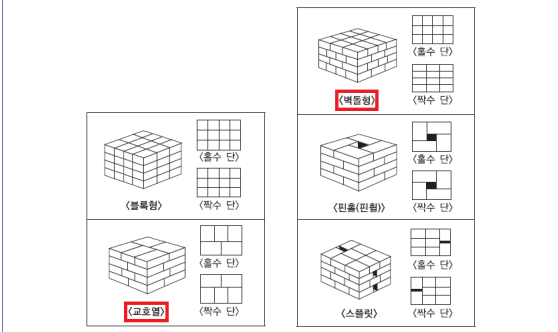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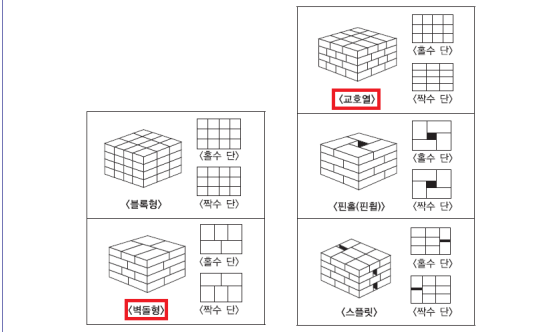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권 14p ㉔ 하단 표	오타	신뢰성 (Convenience) 편리성 (Reliability)	신뢰성 (Reliability) 편리성 (Convenience)
4권 17p 참고박스	개념,공식-설명	납기 KPI : 수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여 리드타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표	납기 KPI : 수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여 리드타임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표
5권 21p 참고박스	개념,공식-설명	참고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자격(영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20년 / 16년 / 15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5항) 법 제2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 기준(제6항) 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추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차·사각 및 [중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참고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자격(영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20년 / 16년 / 15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5항) 법 제2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 기준(제6항) 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추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차·사각 및 [중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수정 사유	법 개정
5권 25p 참고박스	개념,공식-설명	참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자격(영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5항) 법 제2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 기준(제6항) 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추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차·사각 및 [중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물류정보의 처리·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참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자격(영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5항) 법 제2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 기준(제6항) 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추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차·사각 및 [중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물류정보의 처리·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수정 사유	법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5권 30p 참고박스	개념, 공식-설명	참고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영 별표1의2) <table><thead><tr><th>물류사업</th><th>인증대상물류기업</th><th>인증주체</th></tr></thead><tbody><tr><td>1. 화물운송업</td><td>화물자동차운송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td></tr><tr><td>2. 물류시설운영업</td><td>물류창고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td></tr><tr><td>3. 물류서비스업</td><td>가. 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td></tr><tr><td>4. 종합물류서비스업</td><td>종합물류서비스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td></tr></tbody></table>	물류사업	인증대상물류기업	인증주체	1.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	3. 물류서비스업	가. 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참고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영 별표1의2) <table><thead><tr><th>물류사업</th><th>인증대상물류기업</th><th>인증주체</th></tr></thead><tbody><tr><td>1. 화물운송업</td><td>화물자동차운송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td></tr><tr><td>2. 물류시설운영업</td><td>물류창고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td></tr><tr><td>3. 물류서비스업</td><td>가. 국제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td></tr><tr><td>4. 종합물류서비스업</td><td>종합물류서비스기업</td><td>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td></tr></tbody></table>	물류사업	인증대상물류기업	인증주체	1.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	3. 물류서비스업	가. 국제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물류사업	인증대상물류기업	인증주체																															
1.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																															
3. 물류서비스업	가. 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물류사업	인증대상물류기업	인증주체																															
1.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함																															
3. 물류서비스업	가. 국제물류주선기업 나. 화물정보망기업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5권 45p 참고박스	개념, 공식-설명	참고 투자유치활동등의 평가대상기관 등(영 제5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 ·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나	참고 투자유치활동등의 평가대상기관 등(영 제5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 ·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나																														
5권 50p 상단 첫째줄	개념, 공식-설명	㉔ 종합 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㉔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권 53p (6)	오타	① 임 위 위치저장	① 임의 위 위치저장																														
1권 55p ② 기존의 물류활동패턴	오타	기존 물류활동의 심층적 이해를 통해 더욱 발 절 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	기존 물류활동의 심층적 이해를 통해 더욱 발 전 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																														
1권 79p (1) 포장합리화의 개념	오타	공유 의 기능	고유 의 기능																														
4권 85p 번호 : 05	해설	금액단가가 높은 것에 적용되는 것은 정량발주법이다.	재주문점법은 정량발주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량으로 발주하며 주로 금액단가가 낮은 것에 적용된다.																														
1권 97p 참고박스	오타	위험물 차량 관리(HMM)	위험물 차량 관리(HMMS)																														
3권 120p (7) 해운운임지수 - ②	문제-본문	② MR	② MRI																														
3권 123p 참고박스 내용 첫번째 줄	오타	Int o rmation	Inf o rmation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권 131p ② 재질에 따른 분류	오타	㉞ 철제 파렛트 : 목제 파렛트와 더불어 최근 수요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강도, 내구성, 조형의 자립성 등이 강하여 중량물 하역에 많이 사용된다. 보수가 어렵고 중량이 무거우며, 하역 시 미끄러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㉞ 철제 파렛트 : 목재 파렛트와 더불어 최근 수요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강도, 내구성, 조형의 자립성 등이 강하여 중량물 하역에 많이 사용된다. 보수가 어렵고 중량이 무거우며, 하역 시 미끄러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4권 137p	개념,공식-설명	④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 포크와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차체 옆쪽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역할 때는 차체 측면으로 아우트리거를 대서 차체 측면으로 대서, 차체 측면 방향으로 포크 승강장치를 접근시켜 화물을 승강한다.	④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 포크와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차체 옆쪽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역할 때는 차체 측면으로 아우트리거를 대서 차체 측면 방향으로 포크 승강장치를 접근시켜 화물을 승강한다.
2권 137p	오타	㉞ Dispatch Money	㉞ Despatch Money
4권 139p	개념,공식-설명	㉞ 퍼니스 차저(Furnace Charger) : 원료의 용해를 등에 투입하기 위한 부속장치	㉞ 퍼니스 차저(Furnace Charger) : 원료를 밀어넣거나 원료용해에 사용 하는 부속장치
3권 158p ② 헤이그- 비스비규칙	개념,공식-설명	㉞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에 관하여 선하증권통일조약은 화물의 '포장물 또는 단위(Package or Unit)' 당 100Sterling Pound 또는 이와 동등한 금액으로 정함	㉞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한도액을 기존 100파운드에서 1만 프랑(Franc)으로 인상하고, 화물중량 1kg에 대하여 30프랑으로 계산된 총액을 산출하여 많은 쪽을 운송인의 책임한도로 삼도록 함
4권 198p	개념,공식-설명		
3권 200p (4) 해상위험의 변경	오타	㉞ 이 론	㉞ 이 로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권 200p (3)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개념, 공식-설명	(3)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 ① 설립 :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감시를 위한 관리기구로서 1947년 시카고조약에 의거하여 발족된 유엔전문기관으로 현재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② 설립목적 ① 국제민간항공의 발전 및 평화적 목적의 항공기 설계와 운항기술 장려 ② 공항 및 항공보안시설의 권장 ③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인 경제적 항공운송 촉진 ④ 과다경쟁 방지와 비행의 안전 증진 ⑤ 국제민간항공의 전 분야에 대한 발전 촉진	(3)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 ① 설립 : 1926년 3월 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세계적인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다. ② 설립목적 : 국가별 대리점협회와 개별 대리점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1926년 비엔나에서 국제적인 대리업의 확장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설립하였다.
4권 206p 번호 : 4	해설	상업용 포장의 1차적 기능은 보호기능이고, 2차적인 기능은 판촉기능이다.	공업용 포장의 1차적 기능은 보호기능이고, 상업용 포장의 1차적인 기능은 판촉기능이다.
3권 211p 협회적하약관 비교 표	개념, 공식-설명	(C) 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X 6. 지진, 분화, 낙뢰 O	(C) 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O 6. 지진, 분화, 낙뢰 X
2권 222p (2) - ③	오타	캐나다 랜드브리지(CLB ; Canadia Land Bridge)	캐나다 랜드브리지(CLB ; Canadian Land Bridge)
4권 225p 번호 : 25	정답	[해설] 품질 KPI는 완제품불량률 감소, 공정불량률 감소, 검사불량률 감소, 반품율 감소, 클레임 건수 감소를 통해 물류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이다. [정답] ④	[해설] 납기 KPI는 수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여 수주출하리드타임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표이다. [정답] ③
3권 269p (7)	오타	(7) CSI & C-TAPT	(7) CSI & C-TPAT
2권 276p (1)	개념, 공식-설명	③ 이어서 A점에서 이동할 수 있는 B, C, D점에 S의 거리 값을 합산하여 표시[B(A, 8), C(A, 8), D(A, 5)]하고, B점과 연결되는 A, C, E점에도 마찬가지로 S와의 거리 값을 합산하여 표시[A(B, 9), C(B, 7), E(B, 7)]한다. 각각의 비용을 비교하여 더 작은 쪽을 가리키도록 하며, 여기서는 A-D를 향하도록 한다.	③ 이어서 A점에서 이동할 수 있는 B, C, D점에 S의 거리 값을 합산하여 표시[B(A, 8), C(A, 8), D(A, 5)]하고, B점과 연결되는 A, C, E점에도 마찬가지로 S와의 거리 값을 합산하여 표시[A(B, 9), C(B, 7), E(B, 11)]한다. 각각의 비용을 비교하여 더 작은 쪽을 가리키도록 하며, 여기서는 A-D를 향하도록 한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권 279p 하단 4번째 그림	개념, 공식-설명		
2권 283p (2) 최소비용법 표	오타	공장2의 공급량 620	공장2의 공급량 600
5권 315p 참고박스 제목	개념, 공식-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영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영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5권 332p	개념, 공식-설명	(5) 철도사업의 면허의 결격사유(법 제7조) 19년 / 18년 / 17년 / 11년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㉔과 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말한다.	(5) 철도사업의 면허의 결격사유(법 제7조) 19년 / 18년 / 17년 / 11년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㉔과 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말한다.
		수정 사유	법 개정
5권 345p (4)	개념, 공식-설명	(4)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법 제37조) 18년 / 15년 ① 상속신고 및 기한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신고의 효력 ㉔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㉕ 상속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타 규정의 준용 :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전용철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4)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법 제37조) 18년 / 15년 ① 상속신고 및 기한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신고의 효력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㉕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③ 타 규정의 준용 :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전용철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수정 사유	법 개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